

# 『2024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』

## 【시비/도비매칭】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김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『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』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. 1. .

김포시장

<2024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주요 내용 비교>

\* 시비 사업과 도비매칭 사업의 지원 조건 및 제출 서류가 상이 하니 내용 확인 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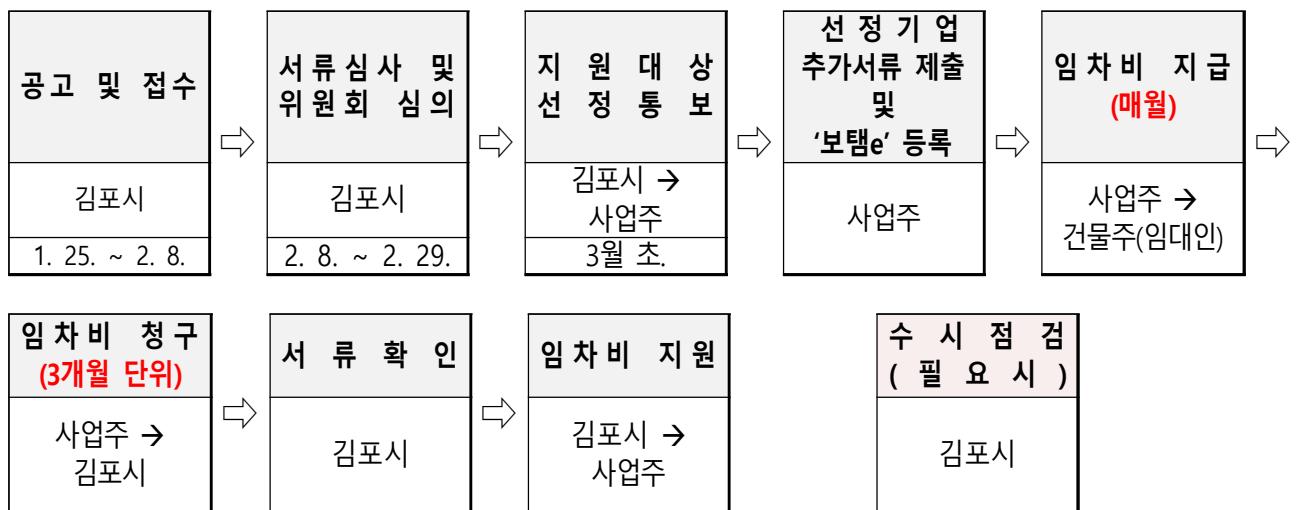
구 분	유형 I : 시비 사업 [공고문 2p]	유형 II : 도비매칭 사업 [공고문 6p]
지원 대상	관내 소재 매출액 120억 미만 중소 제조기업 (2023년 기준)	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 (매출액 제한 없음)
지원 한도 및 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월 임차료의 80%이내 지원</li> <li>- 1인당 월 20만원 한도</li> <li>- 기업당 2인 이내</li> </ul> <p>-&gt; 25명, 총 13개사 내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월 임차료의 80%이내 지원</li> <li>- 1인당 월 30만원 한도</li> <li>- 기업별 5인 이내</li> </ul> <p>-&gt; 43명, 총 9개사 내외</p>
지원가능 근로자 유형	외국인 근로자	내국인 근로자
유의 사항	<p>* 사업주 명의로 직접 관내 주거용 시설 월세 임차계약 후 노동자에게 제공 시에 한하며, 보증금 및 관리비는 사업주 또는 이용자 부담</p> <p>* 시비 사업, 도비매칭 사업 <u>중복 지원 불가</u>하므로 두 사업중 택 1</p> <p>* 제출서류 미비 시 해당부분 0점 처리</p>	

# 2024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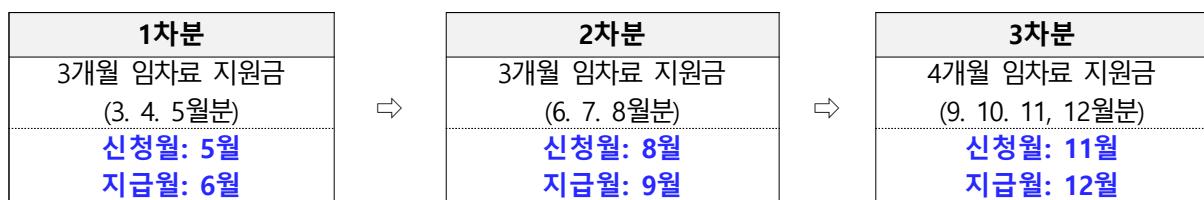
## [유형 I : 시비 사업]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여건상 기숙사 신축이 어려운 중소기업(제조업)에 기숙사 임차료의 일부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인력부족 문제 해소 도모
- 지원대상 : 김포시 관내 매출액 120억 미만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(월세) 운영기업
- 지원기간 : 2024년 3월 1일~ 12월 31일까지 지원 (10개월)
- 지원규모 : 25명, 총 13개사 내외 지원
- 지원내용 : 기숙사 임차료 지원
  - 사업주 명의로 관내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 시, 임차료(월세)의 80% 이내 지원
  - 기업별 2명 이내, 1명당 2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
  - [외국인 근로자 대상](#)
- 지원절차



- 임차료 지원 보조금 차수별 지급일정



## 2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- 접수기간 : 2024. 1. 31.(수) ~ 2. 14.(수) 18:00
- 신청방법 : 제출서류 지참하여 **내방 또는 등기우편** 접수 (이메일접수 불가)
  - ※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( 김포시 돌문로 43, 사우동 원랜드 4층 기업지원과 )
  - ※ 우편접수 시,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
- 제출서류 ※ **붙임 제출서류 목록표** 참고

## 3. 지원대상 및 상세 기준

### 사업 상세 기준

-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·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
  - 사업주는 건물주(임대인)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
- 기업별 2인 이내, 1인당 2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
  - 임차비(월세)의 80%(20만원 한도) 지급
  -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
  -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
### 신청자격

구 분	신청자격 요건
1	• <b>매출액 120억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</b> ※ 2023년 매출액 기준
2	• <b>김포시 내에 사업장(본점, 지사, 공장)이 소재하는 기업</b> ※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
3	• <b>사업주 명의로 관내 주거용 시설을 계약·임차 및 사업주가 직접 월세 부담하는 기업</b>
4	• <b>외국인 근로자 대상</b> ※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은 제외.
5	• <b>근무지(기업)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</b> ※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,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허용 (단, 근무지는 관내에 있을 것)
6	• 그 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<b>부합하는 기업</b>

## □ 제외 대상

- ① 업무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시설(\*임대차 계약서 기준), 전세를 통한 임대, 대표자 자가 등 제외
-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
- 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
- ④ **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**  
(예 : 기업, 기업대표,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)
- 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**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**
- ⑥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
- ⑧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
- ⑨ 국세, 지방세 체납 기업
- ⑩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
- ⑪ 「2024년도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지원 사업(도비매칭)」 지원 기업
- ⑫ **중복 신청 불가 \*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**
- ⑬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

## 4. 유의사항

- 본 사업의 선정이후의 모든 절차는 '**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**'를 통해 진행됨.
- 본 사업 선정 이후, 모든 보조사업자는 '**보조금전용통장**'을 이용하여야 함
-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
  - 청구 시 월 임차료 이체내역 등 **선지급 증빙 서류** 및 종사자 근로관계 서류  
(4대보험 가입증명서, 재직증명서, 출근부, 기숙사 이용확인서 등) 제출
  - 교부신청 시,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증빙서류 제출 시, 지급 가능.  
(보증금 차감을 통한 지급, 현금 지급으로 증빙불가 등 임의 변경 금지)
-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**10일 이내** 사업수행기관에 통보  
(단,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**증빙서류 제출** 시 월세 비용 20만원 한도 내 지원.)
-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**10일 이내** 사업수행기관에 통보

## 5. 선정방법 : 평가항목 및 배점표 산정 점수순으로 업체 선정

평가배점 동점 시,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.

- 1순위) 2023년 매출액이 적은 순
- 2순위) 매출액 증가율이 큰 순
- 3순위) 2023년 고용인원이 적은 순

## 6. 결과통보 : 2023. 3. 4.(월) ※ 결과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## 7. 문의처 :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(☎031-980-2284)

붙임.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(유형 I) 각 1부

## 참고. 평가항목 및 배점표 [시비사업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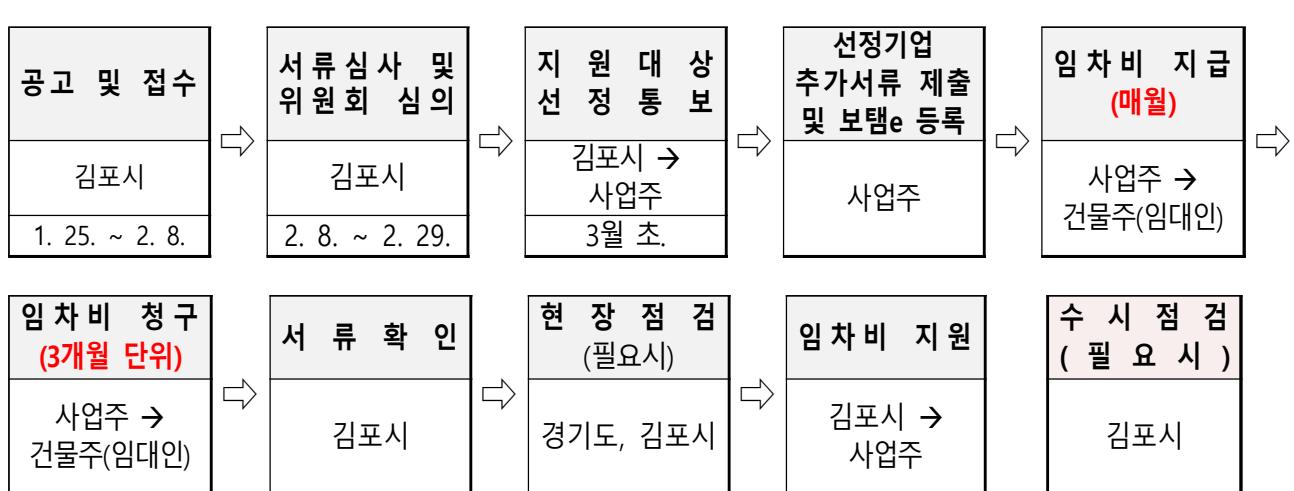
부문	평가항목	평가기준	평가방법						
필요성 (40점)	매출액 (20점)	■ 매출액 [최근 3년 평균]	매출	10억 미만	10억 ~ 30억 미만	30억 ~ 50억 미만	50억 ~ 80억 미만	80억 ~ 100억 미만	100억 ~ 120억 미만
	고용인원 (20점)	■ 고용인원 [2023년 기준]	점수	20	16	12	8	4	0
기술성 및 성장 가능성 (20)	매출액 증가율 (10)	■ 매출액 증가율(%) [최근 3년간] = (당기매출액 - 전기매출액)×100 - 100	※최대배점 : 10점 ( 매출액증가율 / 50 ) × 10						
	업력 (5)	■ 사업 운영기간 (공고일기준,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)	운영 기간	10년 이상	5년이상 10년미만	3년이상 5년미만	3년미만		
	기술개발 실적 (5점)	■ 기술개발실적 (건) - ISO관련 인증, 국내규격인증, 해외규격인증, 특히 또는 실용신안 인증, NEP 또는 NET	점수	5	3	1	0		
지역 사회 기여도 (15점)	공장등록 여부 (5점)	■ 공장등록여부 - 공장등록 O (5점) - 공장등록 X (0점) (단,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: 5점)	※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㎡ 미만이 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“공장 또는 제1, 2종 근린생활시설”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						
	지역고용 기여 (10)	■ 지역고용비율(%) [2023년 12월 31일 기준] = (김포시 거주 종업원 수 / 종업원 수) × 100	비율 (%)	80이상	50 ~ 79.99	40 ~ 49.99	30 ~ 39.99	~29.99	
사업 지원 타당성 (25)	고용 증가율 (10)	■ 고용증가율(%) (최근2년간) = {[('23년 고용인원 / '22년 고용인원)×100-100] + [('22년 고용인원 / '21년 고용인원)×100-100]} / 2	※최대배점 : 10점 ( 고용증가율 / 40 ) × 10						
	평균근속 (5)	■ 평균 근속 연수	근속 연수	5년이상	3년이상 5년미만	2년이상 3년미만	1년이상 2년미만	1년미만	
	신규채용 청년고용 (10)	■ 신규직원(3년 미만 입사자), 청년노동자(만 34세 이하) 비율 (10점) = (신규직원+청년노동자 수 / 고용인원)×100-100 * 청년과 신규인력이 중복일 경우 1인으로 계산	※최대배점 : 10점 ( 신규직원 및 청년노동자비율 / 60 ) × 10						
가점	가점 (20)	■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뿌리기업, 사회적기업 ■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기업 ■ 가족친화 인증기업 ■ 김포시 중소기업대상(최근 5년) ■ 3년이내 본사 관내 이전 ■ 경기 유망 중소기업, 경기 일자리 우수기업,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	※ 건당 3점, 최대 20점						

# 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

## [유형 II : 도비매칭 사업]

### 1. 사업개요

- 목적 :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고용확대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
- 지원대상 : 김포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(월세) 운영기업
- 지원기간 : 2024년 3월 1일~ 12월 31일까지 지원 (10개월)
- 지원규모 : 43명, 총 9개사 내외 지원
- 지원내용 : 기숙사 임차료 지원
  - 사업주 명의로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 시, 임차료(월세)의 80% 이내 지원
  - 기업별 5인 이내,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
  - **내국인 근로자 대상**
- 지원절차



- 임차료 지원 보조금 차수별 지급일정

1차분	2차분	3차분
3개월 임차료 지원금 (3. 4. 5월분)	3개월 임차료 지원금 (6. 7. 8월분)	4개월 임차료 지원금 (9. 10. 11. 12월분)
<b>신청월: 5월 지급월: 6월</b>	<b>신청월: 8월 지급월: 9월</b>	<b>신청월: 11월 지급월: 12월</b>

## 2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- 신청기간 : 2024. 1. 31.(수) ~ 2. 14.(수) 18:00
- 신청방법 : 제출서류 지참하여 **내방 또는 등기우편** 접수 (이메일접수 불가)
  - ※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( 김포시 돌문로 43, 사우동 원랜드 4층 기업지원과 )
  - ※ 우편접수 시,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
- 제출서류 ※ **붙임 제출서류 목록표** 참고

## 3. 지원대상 및 상세 기준

### 사업 상세 기준

-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·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
  - 사업주는 건물주(임대인)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
- 기업별 5인 이내,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
  - 임차비(월세)의 80%(30만원 한도) 지급
  -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
  -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- 신규인력\* 또는 청년노동자\*\* 포함 시, 우선 선정 (배점표 포함 및 동점시 우선선정)

\*신규인력 :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

\*\*청년노동자 : 만 34세 이하 노동자

### 신청자격

구 분	신청자격 요건
1	• 관내 중소 제조기업
2	• 김포시 내에 사업장(본점, 지사, 공장)이 소재하는 기업 ※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
3	• 사업주 명의로 관내 <u>주거용 시설</u> 을 계약·임차 및 <u>사업주가 직접 월세 부담하는</u> 기업
4	•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• 내국인 근로자 대상
5	• 근무지(기업)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 ※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,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허용 (단, 근무지는 관내에 있을 것)
6	• 그 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

## □ 제외 대상

- ① 업무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시설(\* 임대차 계약서 기준), 전세를 통한 임대, 대표자 자가 등 제외
-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
- 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
- ④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
(예: 기업, 기업대표,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)
- 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
- ⑥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
- ⑧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
- ⑨ 국세, 지방세 체납 기업
- ⑩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
- ⑪ 「2024년도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지원 사업(시비매칭)」 지원 기업
- ⑫ 중복 신청 불가 \*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
- ⑬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

## 4. 유의사항

- 본 사업의 선정이후의 모든 절차는 「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」를 통해 진행됨.
- 본 사업 선정 이후, 모든 보조사업자는 「보조금전용통장」을 이용하여야 함
-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
  - 청구 시 월 임차료 이체내역 등 선지급 증빙 서류 및 종사자 근로관계 서류  
(4대보험 가입증명서, 재직증명서, 출근부, 기숙사 이용확인서 등) 제출
  - 교부신청 시,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증빙서류 제출 시, 지급 가능.  
(보증금 차감을 통한 지급, 현금 지급으로 증빙불가 등 임의 변경 금지)
-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  
(단,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 비용 20만원 한도 내 지원.)
-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

## 5. 선정방법 : 평가항목 및 배점표 산정 점수순으로 업체 선정('붙임1' 참조)

평가배점 등점 시,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.

- 1순위)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기업 \* 포함 인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둠
- 2순위) 도비매칭 기숙사임차료 지원사업 신규 신청 기업
- 3순위) 2023년 매출액이 적은 순

## 6. 결과통보 : 2023. 3. 4.(월) ※ 결과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## 7. 문의처 :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(☎031-980-2284) 붙임.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(유형 Ⅱ) 각 1부

## 참고. 평가항목 및 배점표 [도비매칭사업]

부문	평가항목	평가기준	평가방법							
필요성 (35점)	사업 지원 타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 운영기간 (10점) (공고일기준,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)</li> </ul>	운영 기간	10년 이상	5년이상 10년미만	3년이상 5년미만	3년미만			
		점수	10	7	4	1				
		<b>※최대배점 : 15점</b> $(\text{고용증가율} / 40) \times 15$								
적정성 (30)	신청내용 및 운영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장등록여부 (5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장등록 O (5점)</li> <li>- 공장등록 X (0점)</li> </ul> </li> </ul> <p>(단,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: 5점)</p>	<b>※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</b> <p>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m<sup>2</sup>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“공장 또는 제1, 2종 근린생활시설”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</p>					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고용인원 [2023년 12월말 기준] (15점)</li> </ul>	인원	5명미만	5명 ~ 10명	11명 ~ 20명	21명 ~ 30명	31명 ~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숙사 신청 인원 (10점)</li> </ul>	인원	5명	4명	3명	2명	1명		
건전성 (25)	재무의 건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매출액 증가율(%) [2020~2022년] (15점) <math display="block">= (\text{당기매출액} - \text{전기매출액}) \times 100 - 100</math></li> </ul>	<b>※최대배점 : 15점</b> $(\text{매출액증가율} / 50) \times 10$					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부채비율 (5점) [2022년 재무제표 기준] <math display="block">= (\text{부채총계} / \text{자본총계}) \times 100</math></li> </ul>	부채 (%)	20% 이하	20%초과 40%이하	40%초과 70%이하	70%초과 100%이하	100%초과 200%이하	200%초과	
	성장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술개발실적 (건) (5점) - ISO관련 인증, 국내규격인증, 해외규격인증,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인증, NEP 또는 NET</li> </ul>	점수	5	4	3	2	1	0	
가점 (20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뿌리기업, 사회적기업</li> <li>■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기업</li> <li>■ 가족친화 인증기업</li> <li>■ 김포시 중소기업대상(최근 5년)</li> <li>■ 3년이내 본사 관내 이전</li> <li>■ 경기 유망 중소기업, 경기 일자리 우수기업,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</li> <li>■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</li> </ul>	<b>※ 건당 2점, 최대 5점</b>							
			<b>※ 건당 3점, 최대 20점</b>							